

의안번호	2126318
의 퇴 인	송석준 의원
회 답 일	2024. 1. 24.
추 계 번호	24F00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4년 315.6억원, 2025년 720.9억원 등 2024년에서 2025년까지 2년간 총 1,036.5억원(연평균 518.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다자녀 양육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신설함에 따라 자동차세수는 2024년 315.6억원, 2025년 604.1억원 등 2024년에서 2025년까지 2년간 총 919.7억원(연평균 459.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부칙에 따라 2024년 하반기분 자동차세부터 면제되는 것을 가정하여, 2024년은 연간 효과의 절반만 반영된 결과임
 - 다자녀 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할 경우, 재산세수는 2025년 1년간 총 116.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부칙에 따라 2025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것을 가정하여, 2025년 1년간 세수효과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자동차세·재산세

(단위: 억원)

	2024	2025	누적	연평균
다자녀 양육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신설(안 제22조의2)	-315.6	-604.1	-919.7	-459.8
다자녀 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36조의6)	-	-116.8	-116.8	-116.8
계	-315.6	-720.9	-1,036.5	-518.2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와 관련된 지방세 감면을 종전 취득세 면제에서 자동차세 면제까지 확대하는 내용 - 내용: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신설 - 적용기한: 2025년 말까지 부과된 자동차세에 한함	
2	안 제36조의6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재산세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자녀들과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 감면율: 50% - 감면한도: 100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2	안 제36조의6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재산세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 가구(이하 “다자녀 양육가구”)가 2017~2022년 연평균 변동률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가정

-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가구는 2017년 567,469 가구에서 2022년 455,911 가구로 연평균 4.3%씩 감소

□ 다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

- 다자녀 양육가구 중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 비중이 90.5%이며, 향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 「제15차 재정패널조사(2021년 기준)」상 미성년자 가구원 3인 이상인 가구 중 자동차를 1대 이상의 보유한 비율은 90.5% 수준
- 「재정패널조사」로 파악한 다자녀 양육가구가 보유한 차량의 배기량 분포가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 「제15차 재정패널조사(2021년 기준)」상 미성년자 가구원 3인 이상인 가구가 보유한 자동차의 배기량 분포는 다음과 같음

[표 2] 다자녀 양육가구 보유 차량의 배기량 분포: 2021년

(단위: %)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500cc 이하	3000cc 이하	3000cc 초과
비중	5.8	8.8	29.8	39.2	9.9	6.4

주: 여러 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보유 차량 중 가장 큰 배기량을 기준으로 파악함

자료: 「제15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배기량 구간별 1대당 평균 자동차세액은 2022년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
 - － 「2023 지방세통계연감」상 배기량 구간별 평균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음

[표 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자가용)의 1대당 평균 자동차세액: 2022년

(단위: 만원)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500cc 이하	3000cc 이하	3000cc 초과
1대당 평균 자동차세	4.4	8.9	15.1	20.4	20.8	28.7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다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15차 재정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자가(1가구 1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양육가구의 비중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제15차 재정패널조사」상 다자녀 양육가구 자가주택의 2021년 기준 공시가격¹⁾이 2022~2023년 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 2024년 이후 주택 공시가격은 2023년의 공시가격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

[표 4]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전국, 2022~2023년

(단위: %)

	2022	2023
공동주택	17.20	-18.63
표준단독주택	7.34	-5.95

□ 개정안이 2024년 상반기 중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자동차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한 세수효과 추계

- (자동차세)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경우 2024년 하반기(7~12월) 자동차세분부터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전제
 - 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2025년까지 부과된 자동차세까지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4~2025년간 발생
- (재산세) 재산세 납세기준일은 6월 1일로, 개정안이 2024년 상반기 중 통과되어 2025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부터 감면이 적용된다고 전제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다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신설 세수효과

(1) 추계방법

- (다자녀 양육가구 수 현황)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3명 이상인 다자녀 양육가구는 다음과 같음
- 2017년 56.7만 가구에서 2022년 45.6만 가구로 연평균 4.3% 감소

1) 재산세 부과 시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을 적용(「지방세법」 제4조)

[표 5]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 현황: 2017~2022년

(단위: 가구)

자녀 수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3자녀	519,957	499,093	472,344	467,629	448,404	417,125
4자녀	41,597	40,269	38,359	38,129	36,683	33,998
5자녀 이상	5,915	5,785	5,514	5,422	5,220	4,788
계	567,469	545,147	516,217	511,180	490,307	455,911

자료: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다자녀 양육가구 수 전망) 2022년 45.6만 가구를 기준으로, 다자녀 양육가구 수가 향후 '17~'22년 연평균 증감률 -4.3%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6] 향후 다자녀 양육가구 수 전망: 2023~2025년

(단위: 가구)

	2023	2024	2025
다자녀 양육가구 수	417,691	399,800	382,675

자료: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자동차세 면제대상 다자녀 양육가구 수) 다자녀 양육가구 가운데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를 90.5%로 가정하고 자동차세 면제대상 수를 전망

[표 7] 자동차세 면제대상 다자녀 양육가구 수 전망: 2025년

(단위: 가구)

	전체 다자녀 양육가구 (A)	자동차세 면제대상 (A × 90.5%)
2024년	399,800	361,724
2025년	382,675	346,2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배기량별 면제대상 수) 「제15차 재정패널조사」상 배기량 분포를 토대로, 자동차세 면제대상 수를 배기량별로 추정
- 재정패널조사상 다자녀 양육가구의 자동차 배기량별 분포(2021년 기준)는 다음과 같음

- 배기량이 가장 큰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고, 보유 자동차 중 배기량이 가장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배기량 분포를 계산

[표 8] 다자녀 양육가구가 보유한 자동차의 배기량 분포: 2021년

(단위: %)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500cc 이하	3000cc 이하	3000cc 초과
비율	5.8	8.8	29.8	39.2	9.9	6.4

주: 여러 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보유 차량 중 가장 큰 배기량을 기준으로 파악함

자료: 「제15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다자녀 양육가구 보유차량의 배기량 분포가 향후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2025년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수를 배기량 구간별로 추정

[표 9] 다자녀 양육가구의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대수 추정: 2025년

(단위: 대수)

배기량 구간	(비율)	차량대수	
		2024	2025
1000cc 이하	(5.8)	21,153	20,247
1600cc 이하	(8.8)	31,730	30,371
2000cc 이하	(29.8)	107,883	103,262
2500cc 이하	(39.2)	141,728	135,657
3000cc 이하	(9.9)	35,961	34,421
3000cc 초과	(6.4)	23,269	22,272
계		361,724	346,2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1대당 자동차세액)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를 바탕으로 계산한 2022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1대당 평균 자동차세액은 다음과 같음

[표 1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자가용)의 1대당 자동차세: 2022년 기준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500cc 이하	3000cc 이하	3000cc 초과
신고건수 (A, 만건)	224	716	1,117	474	277	190
자동차세액 (B, 억원)	978	6,401	16,856	9,672	5,756	5,462
1대당 평균액 (B/A, 만원)	4.4	8.9	15.1	20.4	20.8	28.7

자료: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수효과) 앞서 전망한 배기량별 차량대수에 1대당 평균 자동차세를 적용하여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신설의 세수효과를 산출

[표 11] 다자녀 양육가구의 자동차세 감면액 추정: 2024~2025년

(단위: 대, 만원)

배기량 구간	1대당 자동차세액	감면액	
		2024 ^{주)}	2025
1000cc 이하	4.4	46,249	88,536
1600cc 이하	8.9	141,747	271,351
2000cc 이하	15.1	814,084	1,558,429
2500cc 이하	20.4	1,446,833	2,769,721
3000cc 이하	20.8	373,159	714,351
3000cc 초과	28.7	333,702	638,816
계		3,155,774	6,041,203

주: 2024년 하반기(7~12월) 자동차세분부터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연간 면제액에 1/2를 적용하여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결과

- 다자녀 양육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신설함에 따라 자동차세수는 2024년 315.6억원, 2025년 604.1억원 등 2024년에서 2025년까지 2년간 총 919.7억원(연평균 459.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부칙에 따라 2024년 하반기분 자동차세부터 면제되는 것을 가정하여, 2024년은 연간 효과의 절반만 반영된 결과임

[표 12]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자동차세, 2024~2025년

(단위: 억원)

	2024년	2025년	누적	연평균
다자녀 양육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신설(안 제22조의2)	-315.6	-604.1	-919.7	-459.8

나. 다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세수효과

(1) 추계방법

- (다자녀 양육가구 수 현황)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3명 이상인 다자녀 양육가구는 다음과 같음
 - 2017년 56.7만 가구에서 2022년 45.6만 가구로 연평균 4.3% 감소

[표 13]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 현황: 2017~2022년

(단위: 가구)

자녀 수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3자녀	519,957	499,093	472,344	467,629	448,404	417,125
4자녀	41,597	40,269	38,359	38,129	36,683	33,998
5자녀 이상	5,915	5,785	5,514	5,422	5,220	4,788
계	567,469	545,147	516,217	511,180	490,307	455,911

자료: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다자녀 양육가구 수 전망) 2022년 45.6만 가구를 기준으로, 다자녀 양육가구 수가 향후 '17~'22년 연평균 증감률 -4.3%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14] 향후 다자녀 양육가구 수 전망: 2023~2025년

(단위: 가구)

	2023	2024	2025
다자녀 양육가구 수	417,691	399,800	382,675

자료: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감면대상 다자녀 양육가구 수 전망) 앞의 다자녀 양육가구 수 전망을 바탕으로 「제15차 재정패널조사」의 자가(1가구 1주택) 거주 비중 및 공시가격 구간별 분포를 적용하여 감면대상 다자녀 양육가구 수 전망
- 「제15차 재정패널조사」 상 다자녀 양육가구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2025년 기준) 자가(1가구 1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47.6% 수준
 - 2024년 이후 주택 공시가격은 2023년의 공시가격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

[표 15] 감면대상 다자녀 양육가구 수 전망: 2025년

(단위: 가구)

		2025
다자녀 양육가구 수	전체(A)	382,675
	감면대상 ¹⁾ ($B=A \times 47.6\%$)	190,381

주: 1) 다자녀 양육가구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25년 기준) 자가(1가구 1주택) 거주 중인 가구를 의미

- 「제15차 재정패널조사」 상 다자녀 양육가구 자가주택의 2025년 기준 공시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음

[표 16] 다자녀 양육가구 거주 자가주택의 2023년 기준 공시가격 분포(9억원 이하)

(단위: %)

	1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비중	24.4	47.8	22.2	5.6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15차 재정패널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공시가격 구간별 감면대상 다자녀 양육가구 수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음

[표 17] 공시가격 구간별 감면대상 다자녀 양육가구 수 전망: 2025년

(단위: %)

	1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비중	46,538	90,960	42,307	10,577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15차 재정패널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가구당 재산세 감면액 추정) 다자녀 양육가구 자가주택의 공시가격 구간별 평균 재산세액을 전망하고, 개정안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50%)을 적용하여 가구당 재산세 감면액 추정

- 「제15차 재정패널조사」를 바탕으로 다자녀 양육가구 자가주택의 공시가격 구간별 평균 재산세액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음
 - 「제15차 재정패널조사」상 2021년 기준 공시가격이 2022~2023년 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에 따라 변동했고, 2024년 이후에는 2023년의 공시가격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재산세액 추정
 - 재산세액 = 주택 공시가격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60%)× 과세표준별 세율*
 - *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세율(과표별 0.5~3.5%) 적용

[표 18] 다자녀 양육가구 거주 자가주택의 공시가격 구간별 평균 재산세액 추정
(단위: 만원)

	1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평균 재산세액(추정)	1.6	6.7	26.3	51.1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15차 재정패널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른 공시가격 구간별 평균 재산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음
 - 재산세 감면액 = 재산세액 × 50% (단, 감면액의 한도는 100만원)

[표 19] 공시가격 구간별 평균 재산세 감면액 추정
(단위: 만원)

	1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평균 재산세 감면액(추정)	0.8	3.4	13.1	25.5

□ (재산세 총 감면액 추정) 공시가격 구간별 평균 재산세 감면액을 바탕으로 다자녀 양육가구 수 전망을 적용하여 재산세 총 감면액 추정

[표 20] 개정안에 따른 재산세 총 감면액 추정
(단위: 억원)

	1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계
재산세 총 감면액(추정)	3.7	30.6	55.6	27.0	116.8

(2) 추계결과

- 다자녀 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할 경우, 재산세수는 2025년 1년간 총 116.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부칙에 따라 2025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것을 가정하여, 2025년 1년간 세수효과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표 2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재산세

(단위: 억원)			
	2025	누적	연평균
다자녀 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36조의6)	-116.8	-116.8	-116.8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정훈(자동차세)	백경엽
세제분석2과	고은비(재산세)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837	nororand@assembly.go.kr
고은비	02-6788-4839	eunbi15@assembly.go.kr